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가압류 신청 시 담보 제공 방식〉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49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관계기관 의견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영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 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시 신청인(채권자)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피신청인(채무자)이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¹⁾ 법원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민사집행법」이 위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준용³⁾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2조⁴⁾는 금전·유가증권의 공탁 및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을 담보제공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함.⁵⁾

- 1) 민사집행법 제280조 소정의 담보제공명령제도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만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 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평의 법리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4. 10. 6. 2004마467 결정).
- 2)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3)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5)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①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은행등”이라 한다)와 맺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금전·유가증권 공탁의 담보제공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제기하는 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본안소송 패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사건에서 가압류 시 공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탁 기간에는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바, 개정안은 법원이 담보제공 방식으로 금전·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인지 첩부·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지첩부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⁶⁾하여, 국가의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 제공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

야 한다.

1. 은행등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2.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된다는 것
3.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
4. 담보권리자가 신청한 때에는 은행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

③ 법 제12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인지 첩부·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국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보제공 방식으로 금전·유가증권의 공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 신청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금액 및 담보제공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⁷⁾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 방법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제출만을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위해 현금공탁 등의 담보제공 방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만을 명령할 수밖에 없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기관채권 등을 가진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만 담보제공의 방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법원 실무상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지첩부법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개정안의 내용에 실익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항상 공적인 지위에서 적절한 보전처분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채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남용되어 채무자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인지첩부법 규정 취지와 어긋날 소지가 있고, 담보제공을 명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